

2014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은퇴 후를 사랑하는 방법 -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에 대한 생각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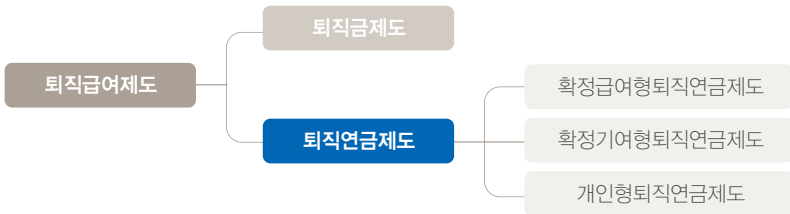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 (DB/DC/IRP 공통)

0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4
02 중도인출, 담보대출, 지연이자	7
0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1
0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12
0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14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19
07 노후 설계의 중요성	20
08 수급권의 보호	22
09 계약이전 절차	22
10 투자의 기본원칙	23

0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2005.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0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 변동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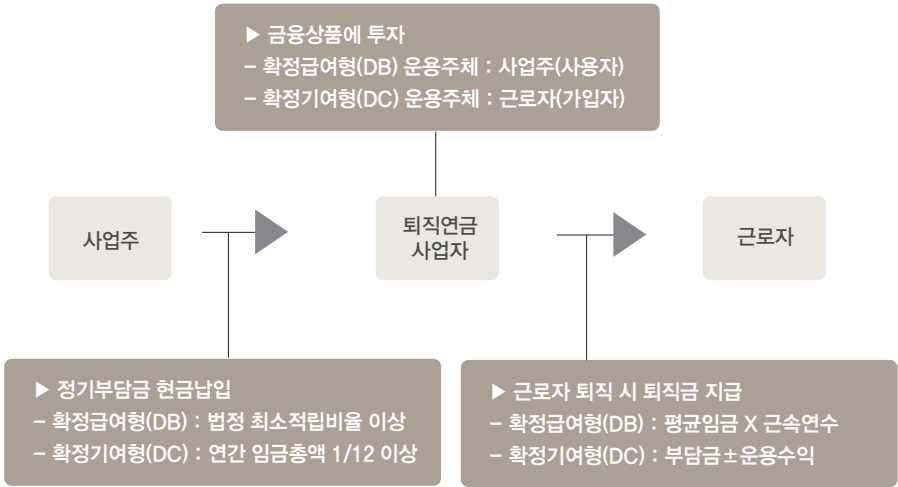
- 기업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 개인형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급여종류	수급요건
연금	55세 이상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0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PROCESS를 통한 제도 유형별 특징 및 급여액



[확정급여형(DB)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의무 부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인 “최소적립비율”을 ‘12년 60%부터 단계적 상향하되, ‘18년 이후는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연도	2014~2015	2016~2017	2018.01.01이후
최소적립비율	70%	80%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함

02 중도인출, 담보대출, 지연이자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도인출	불가능	적립금의 100%
담보제공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50%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의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하고,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연속성 및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 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및 제출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무주택 확인 서약서	당시양식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전 신청 시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02 중도인출, 담보대출, 지연이자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요양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파산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02 중도인출, 담보대출, 지연이자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비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실확인서¹⁾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²⁾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16호 서식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류』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주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채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0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text{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text{주2)}}$$

* 주1)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주2) 총 일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해당 여부]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개인사유로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휴업기간(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습사용기간, 노조전임 기간 • 정의행위기간, 부당해고 기간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따른 이전 근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방학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이전 근로기간 • 정년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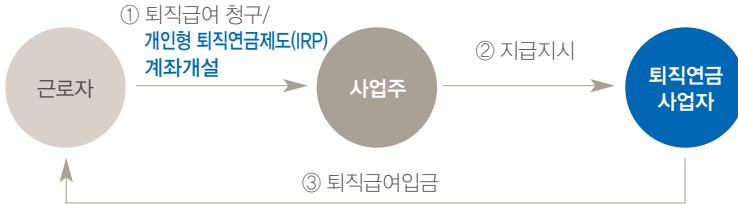
0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후(2012.07.26)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퇴직금을 예치했다가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운용자산의 매각 없이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이전을 원할 경우 신청을 통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현물이전](#)

(당사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퇴직시 당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퇴직급여 이전시만 가능)

퇴직급여 지급절차



IRP 의무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제도
- 퇴직급여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형 IRP에 의무이전
- 퇴직연금 가입자는 재직 중에도 연 1,200만원까지 가입자불입액 입금가능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퇴직연금가입자〉

“ IRP통장을 개설하여 재직 중에는 가입자불입액을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퇴직 시에는 운용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군요!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2014년 퇴직연금 세제 개편

최근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중인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의 연금의 수령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세법 129조 1항)

개정 전	개정 후
통상적인 경우 20%	통상적인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12%

2. 연금계좌 가입자불입액 공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전환

3.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40의 2조 3항)

개정 전	개정 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기타소득 과세(20%)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수령액은 한도 초과시 연금소득 과세(3~5%)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 등에 대한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 세액공제

퇴직소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퇴직소득차감납부세액

- ①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연분연승법]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 1단계 : 연평균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5/근속연수
- 2단계 : 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세율)/5×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5%
30,000만원 초과	38%

※ 지방소득세 별도

과세이연에 관한 사항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운용할 경우 지급시점에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인출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유예합니다. → 세액의 이연(2013.01.01 이후 퇴직자 해당)

퇴직소득세 이연 적용요건

-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지급
-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연금소득의 합계액(공적연금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금소득의 합계액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과세방법 선택 가능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의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 ①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② 비과세소득 제외
- ③ 원천징수
 - 퇴직연금 등(사적연금) : 수령액×세율
 - 국민연금 : 간이세액표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 80세 이후 수령	3%

※ 중복 적용 시 유리한 세율 적용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누진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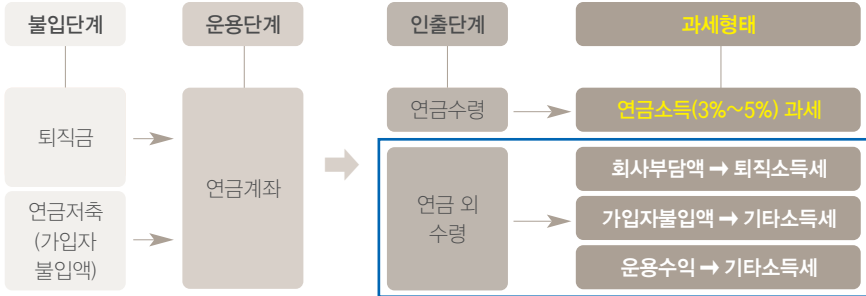
연금소득의 합계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합계액
350만원 ~ 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 × 40%
700만원 ~ 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0%



0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연금 계좌 인출방식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연금계좌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상세내용]

- 개인형 IRP
 - 2012.07.26 이후 가입자불입액+가입자불입액의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과세 (입금일자 기준)
 - 그 이전 사업주 납입(퇴직금 원금)+사업주 납입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 DC/기업형 IRP
 - 2013.01.01 이후 가입자불입액+가입자불입액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과세 (입금일자 기준)
 - 사업주 납입(퇴직금 원금)+사업주 납입의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지급 시(IRP이전 시)까지 퇴직소득세 과세

가입자불입액 관련 세제

- DC / 기업형IRP :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가입자불입액에 대하여 적용
- 개인형IRP : 2012년 7월 26일 이후 불입한 가입자불입액에 대하여 적용

계좌명	• 연금계좌 (연금저축, DC, IRP) 통합
납입한도	• 연금계좌 : 연 1,800만원 • 연금계좌 내 개인형IRP 연 1,200만원 • 분기한도 폐지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전환
과세형태	• 연금수령 시 - 연금소득세 • 연금외 수령 시 - 원금(세액공제 O) : 기타소득세 • 연금외 수령 시 - 원금(세액공제 X) : 비과세 • 연금외 수령 시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기준(과세율, 과세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불입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연금외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세가 기타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퇴직금을 연금수령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외 수령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가입자불입액 과세체계]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폐지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제도의 중단

-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제도의 폐지

-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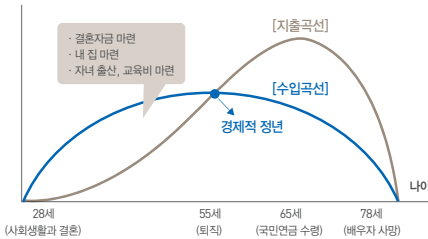


07 노후 설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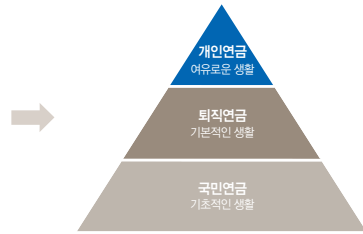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생애주기	결혼기	자녀교육기	가족성숙기	노후생활기
자산관리 이슈	결혼/주택마련 자금	교육투자 자금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상속 및 의료자금
자산관리 계획	대출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투자목적	자산축적	자산축적	자산관리	자산관리 및 소비
안전자산 위험자산	30 : 70	30 : 70	50 : 50	65 : 35
대표적 투자성향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평균적 생애설계 시 고려사항



[라이프사이클과 수입/지출 관계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자금 산출방법

- 노후자금 = 은퇴 직전 소득 × 소득대체율(60~80%) × 노후기간(20~30년)

노후자금 상세 설계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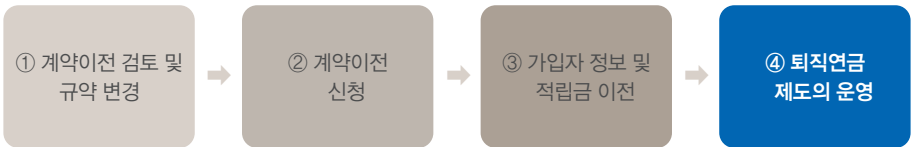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8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09 계약이전 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계약변경

계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투자의 기본원칙

■ 중요한 투자원칙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재테크에 있어 투자 수단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한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아무리 좋다고 하는 투자수단이라고 하여도 한가지 수단에 올인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한가지에 올인 하여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위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투자원칙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재테크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중요한 투자원칙 **타이밍 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단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 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은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 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예금/적금방식으로 운용하는 방법
- 둘째,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 셋째, 채권이나 주식, 수익증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법
- 넷째,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이나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에 투자하는 방법

위험자산 별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① 상장주식, 외국법인발행주식, 증권예탁증서, 주식 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범위가 원금의 10% 초과 파생결합증권, 외국의 투자자격채권	적립금의 30%
② 주식형,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집합투자증권	적립금의 50%
③ 혼합형, 투자등급외 투자형, 재간접형, 외채 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위험자산 전체	적립금의 50%
위험자산 전체	적립금의 70%

[확정기여형(DC)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① 주식, 증권예탁증서, 주식 취득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손실범위가 원금의 10% 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 투자등급 외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위험자산이 50% 이상인 재간접펀드	투자금지
② 주식형 · 혼합형 · 부동산 임대 집합투자증권	적립금의 40%
③ 외국의 투자자격 채권, 외채 투자형 집합투자증권, 외채투자가 50%이상인 재간접펀드	적립금의 30%
위험자산 전체	적립금의 40%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40% 이내임

MEMO

MEMO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상품기획팀

고객지원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